



【검토보고서】

2015. 9. 21(월)
제 261 회 임시회

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



【전문위원 전태언】

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안경과

- 제안자 : 양주시장(안전총괄과)
- 제출일 : 2015년 9월 7일
- 검토일 : 2015년 9월 8일

2. 제안이유

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 제4조)
-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의무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 제6조)
-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~ 제8조)

4. 검토의견

가. 법령검토

- 본 조례는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자치조례이며
- 조례안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과 안전관리업무 이행·조치, 시설별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관계 법령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나. 정책검토

-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가 2011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책임성 있는 정책집행을 하고자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
- 현재 양주시에서 관리중인 어린이놀이시설은 총293개소이며 세부적으로는 어린이실내놀이시설 9개소, 어린이공원놀이시설 43개소, 식당내 시설 1개소, 아동복지시설내 1개소, 어린이집내놀이시설 51개소, 아파트등 주택단지내 놀이시설 188개소 등임.
- 관리주체는(해당시설의 소유자)법령에 따라 2년마다 1회이상 정기 시설검사를 받고 있고 월1회이상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
- 공원 및 아파트 시설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조항은 법령에도 규정되어 있으나 내용이 포괄적이고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운영의 책임성 있는 정책집행에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

-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자치단체의 놀이시설 안전관리의 제도적 근거 마련 및 업무의 체계적 정책운영을 위해 조례제정을 권고하고 있음.
- 본 조례제정을 통하여 우리시의 어린이공원, 놀이터 등 구체적인 안전 및 지도점검의 효율적인 관리·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것이라 판단됨.

다. 내용검토

- 안 제3조에서는 양주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관리주체가 다른 경우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, 감독하여야 함.
-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의 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2년에 1회 정기시설검사 및 월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정하였고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 서면계약을 통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할 수 있게 하였고
- 안 제7조에서는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
- 안 제8조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담당부서를 정하였음.
-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라. 형식검토

- 본 조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.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 체계를 갖추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음.

마. 절차검토

- 입법예고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음.